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22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1월 26일

발 의 자: 허 훈 의원(1명)

찬 성 자: 고광민, 곽향기, 김경훈,
김영철, 김용일, 김혜지,
문성호,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서준오, 이병도,
이희원, 임만균, 정지웅,
황철규 의원(16명)

1. 제안이유

- 2024. 1. 1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법률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억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옥외광고물등 집행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개정법률 제8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정당현수막의 요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제11조의2 제1항 제1호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 제1항 각호”를 “법 제5조, 제8조 제1항 제8호”로, “설치하는”을 “표시·설치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는 행정동별 2개 이내로 하되,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영 제 35조의2에서 정한 장소에는 표시·설치가 제한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의2(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① <u>법 제5조 제1항 각호 및 영 제35조의2의 입법취지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이하 ‘정당 현수막’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u></p> <p>1. <u>법 제8조 제8호와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신고나 장소 제한 없이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안전과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총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한다.</u></p> <p>2. ~ 4. (생략)</p> <p>② (생략)</p>	<p>제11조의2(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① <u>법 제5조, 제8조 제1항 제8호</u> ----- ----- ----- ----- <u>표시·설치하는</u> ----- -----.</p> <p>1. <u>법 제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는 행정동별 2개 이내로 하되,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영 제35조의2에서 정한 장소에는 표시·설치가 제한된다.</u></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1.1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